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

審 査 報 告 書

2005. 12. 15.
제245회 정례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5년 11월 14일
- 회부일자 : 2005년 11월 15일

다. 상정일자 : 제24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 2005. 11. 30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심사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자치행정국장 김 재 욱)

가. 제안 이유

- 첨단바이오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고
- 축산위생연구소의 가축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성한 초지 일부가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감소된 초지에 상응하는 토지를 대체 취득하며
- 미동산수목원이 수목원으로써 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속리산과 청남대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목산야

초전시원 및 방문자 센터를 신축하고

- 대형공장 및 고층아파트의 신축 등으로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오창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재산의 취득 :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 》

- 위 치 :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83-2일원(오송생명과학단지내)
- 단지규모 : 375,884㎡(113,704평)
- 사업기간 : 2006. 1 ~ 12
- 사업비 : 56,852백만원
 - 국 비(75%) : 42,639백만원(281,913㎡)
 - 도 비(25%) : 14,213백만원(93,971㎡)
- ※ 375,884㎡ 중 25%인 93,971㎡를 지분으로 취득

《 국도편입 초지 대체조성 》

- 위 치 :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133-1번지의외 1필지
- 조성규모 : 7,736㎡(2,340평)
 -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133-1 임야 7,240㎡
 -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133-3 임야 496㎡
- 사업기간 : 2006. 1 ~ 12

○ 사 업 비 : 702백만원(도비)

※ 청주시 오동-구성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편입, 손실토지 대체취득
《 수목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 센터 신축 》

○ 위 치 :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7번지 일원

○ 신축규모 : 2식 1,805㎡(546평)

○ 사업기간 : 2006. 4 ~ 2007. 12

○ 사 업 비 : 2,270백만원(국비 1,135 도비 1,135)

《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13-1(오창과학산업단지내)

○ 신축규모 : 지상 2층 연면적 1,320㎡(399.3평)

○ 사업기간 : 2006. 1 ~ 12

○ 사 업 비 : 1,481백만원

3. 검토보고 요지

(기획행정전문위원 연기봉)

- 2006년도 공유재산의 종합적인 관리내용을 담은 본 계획안은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 ▲국도편입 초지 대체조성, ▲수목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 센터 신축,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등 토지 101,707㎡(149억 1,515만 6천원)와 건물 3,125㎡(37억 5,190만원)를 취득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임.
- 먼저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에 관한 사항임.

- 본 사업은 BT산업의 핵심지역인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외국인기업 전용 임대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국비 75%, 도비 25% 각각 426억 3,900만원과 142억 1,300만원 등 총 568억 5,200만원을 투자하여 총 375,884㎡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 매칭펀드방식에 의해 우리 도가 차지하는 지분은 93,971㎡이며, 입지조건은 오송단지 중심부 생산시설용지로서 컨벤션시설 건립 예정지와 연접하고 있음.
-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게 되면 앞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 활성화와 선진 바이오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어 이를 토대로한 연관기업의 도내 이전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142억원이 넘는 막대한 도비가 소요되는 만큼 재원확보 계획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외국인 입주기업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시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현재 외국인전용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기업유치상황 등에 대한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 다음 국도편입 초지 대체조성에 관한 사항임.

- 본 계획은 연구용가축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해 조성한 초지가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오동~구성) 건설공사로 인해 일부 편입됨에 따라 손실된 초지를 대체구입하려는 것으로서,
- 매입예정지는 축산위생연구소 부지내에 위치한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산133-1번지의외 1필지 임야 7,736㎡이며, 총 사업비는 7억 204만 2천원임.

- 앞으로 초지를 대체 조성한다면 원활한 조사료 생산여건을 갖추는 한편, 보다 효율적인 종축사양관리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축산위생연구소 부지내에 소재하고 있어 관리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그 동안 도유재산 매입과정을 살펴보면 감정가와 토지주의 매도가격에 대한 입장차이가 커 매매 협의가 용이치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매매와 관련해 토지주와의 사전 협의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아울러 초지조성 대상지로서의 적합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됨.

○ 다음 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 센터 신축에 관한 사항임.

-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 계획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본 사업은 산림환경연구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수목원내 소재한 현 산야초전시원 비닐하우스가 지난 '99년 설치되어 그 동안 시설 노후화 등으로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 특히 월동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는 한편, 향후 유료화 대비, 정문부근에 방문자 센터를 신축하여 매표소, 안내소, 홍보관, 휴게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 사업규모는 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1,350㎡ 16억 2,000만원, 방문자 센터 455㎡ 6억 5,000만원 등 총 22억 7,000만원이 투자되고 국비와 도비 각각 50%씩 투자할 계획임.
- 따라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면 앞으로 속리산과 대청댐, 그리고 청남대 관광시설까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이벤트지역으로서 각광받을 것으로 검토됨.
- 다만 향후 입장료 수준과 유료화 전후에 대비한 예상 관람객 인

원 비교분석, 그리고 미동산수목원 확대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끝으로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임.**

- 청원군 오창면사무소내 위치한 현 청주동부소방서 율량파출소 오창파견소는 시설이 낡고 비좁으면서 인력 또한 턱없이 부족해 근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최근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소방행정 수요가 급증하여 그 동안 파출소 승격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소방본부에서는 현재 파출소 승격을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파출소 신축부지로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13-1번지 부지 2,000㎡를 '05. 4. 26일 2억 6,518만 7천원에 취득한 바 있음.
- 사업규모는 지상 2층 건평 1,320㎡이며 사업비는 도비 14억 8,100만원임.
- 앞으로 오창파견소가 파출소로 승격되고 청사신축 이전하게 되면 오창단지내 기업 및 아파트 입주에 따른 유사시 신속한 출동 체계를 갖추는 한편,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다만 현재 오창파출소 승격 추진상황과 승격시 예상되는 근무인원 및 장비, 파출소가 관할하는 지역에 대한 보충설명과 함께 신속한 비상대처가 생명인 소방관서의 특성상 지리적 여건이 매우 중요한 바 신축지 주변 도로여건과 관할 구역 예상 출동거리 및 시간 등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 요지 : “생 략”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367

제출연월일 : 2005년 11월 1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첨단바이오기술을 보유한 외국인기업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오송생명과학단지내에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고
- 축산위생연구소의 가축 조사료 생산을 위해 조성한 초지 일부가 청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감소된 초지에 상응하는 토지를 대체 취득하며
- 미동산수목원이 수목원으로써 기능을 원활히 수행함은 물론 속리산과 청남대를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목산야초전시원 및 방문자 센터를 신축하고
- 대형공장 및 고층아파트의 신축 등으로 신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오창과학산업단지의 급증하는 소방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신설되는 오창파출소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 지방재정법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재산의 취득

《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 》

- 위치 :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83-2일원(오송생명과학단지내)
 - 단지규모 : 375,884㎡(113,704평)
 - 사업기간 : 2006. 1 ~ 12
 - 사업비 : 56,852백만원
 - 국비(75%) : 42,639백만원(281,913㎡)
 - 도비(25%) : 14,213백만원(93,971㎡)
- ※ 375,884㎡중 25%인 93,971㎡를 지분으로 취득

《 국도편입 초지 대체조성 》

- 위 치 :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133-1번지의 1필지
- 조성규모 : 7,736㎡(2,340평)
 -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133-1 임야 7,240㎡
 - 청원군 내수읍 구성리 133-3 임야 496㎡
- 사업기간 : 2006. 1 ~ 12
- 사 업 비 : 702백만원(도비)
 - ※ 청주시 오동-구성간 국도 대체우회도로 편입, 손실토지 대체취득

《 수목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 센터 신축 》

- 위 치 : 청원군 미원면 미원리 17번지 일원
- 신축규모 : 2식 1,805㎡(546평)
- 사업기간 : 2006. 4 ~ 2007. 12
- 사 업 비 : 2,270백만원(국비 1,135 도비 1,135)

《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

- 위 치 : 청원군 오창면 양청리 813-1(오창과학산업단지내)
- 신축규모 : 지상 2층 연면적 1,320㎡(399.3평)
- 사업기간 : 2006. 1 ~ 12
- 사 업 비 : 1,481백만원

3. 예산상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재산취득	재산처분	비 고
계	18,667,056		
○ 오송외국인투자지역 조성	14,213,114		
○ 국도편입 초지 대체조성	702,042		
○ 수목산야초전시원 유리온실 및 방문자 센터 신축	2,270,000		
○ 청주동부소방서 오창파출소 신축	1,481,900		

4.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서 : 별첨

5.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재정법 제77조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

관계법령발취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지 방 재 정 법	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
<p>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p> <p>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78조(공유재산심의회)①공유재산의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p> <p>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p>	<p>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법 제 7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 1항제 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p> <p>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예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p>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처분의 경우에는 2억원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이 경우 예정 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p> <p>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p>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p>제37조(공유재산관리계획)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도지사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p>	<p>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①조례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13호서식) 2 ~ 5호 생략